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 2016.2.4.] [법률 제14025호, 2016.2.3., 일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 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최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서 비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또는 다른 제품의 가공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납 과

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또한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 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회수한 이후 폐기 등을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제2조제13호 및 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5 신설, 제41조·제45조·제47조 등)

- 1)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1) 가축의 도살·처리하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나, 사슴 등을 자가소비나 직접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의 도축·처리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 축산물의 위생을 위하여 도축장에서의 도축·처리 의무 면제 가축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2) 가축의 소유자가 자가소비 또는 직접 조리·판매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식육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 현재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제9조의4제5호).

라.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 확대 (제12조제3항)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가공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검사 의무를 축산물가공업자 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함.

- 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벌칙 기준 등을 신설함(제12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5조제4항).

- 사.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

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28조제1항).

아.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제28조제5항 신설, 제28조의2제4항)

1)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자.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차. 영업자 등이 축산물을 회수하면 이를 폐기 또는 용도전환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함(제31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

카.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제45조제3항제1호).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

전처 소관) 홍윤식

◎ 법률 제1402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분유류”를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판매하기”를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족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족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4제5호 중 “1년 이내에 2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에 제4조제5항·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24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제31조의2제1항·제2항”을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2억 원”을 “10억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하기”를 “부과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시·도지사

제2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을 “다음 각 호의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제3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의 제목 중 “등”을 “및 폐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회수하거나 회수에”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수하거나 회수에”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으로, “회수계획을”을 “회수·폐기 계획을”로,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결과”를 “회수·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폐기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 또는 회수”를 “회수 또는 폐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수대상 축산물,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를 “회수·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폐기의 계획, 회수·폐기의 절차 및 회수·폐기의 결과 보고”로 한다.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 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 ②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과 그 포장”을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수계획”을 “회수 및 폐기 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제44조제1항 본문 중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4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45조제3항 중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제45조제4항에 제5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제5호의2”로 한다.

- 5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제45조제6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제47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영업자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안전관리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 및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